

일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요지**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평가 제도 도입,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박 승 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산업안전과장



□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8475호)이 2007년 5월 17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그 개정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1.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등 부착 노력의무 신설(제12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작업장내에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에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 및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06년 9월 현재

국가수	근로자수	사업재해자수(연간)
18개국	40여만명	2,500여명

2. 중대재해발생시 현장보존의무 신설(제26조)

중대재해발생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훼손되어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해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발생시 현장보존의무가 신설됐다.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장관이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가 발생된 때부터 재해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해발생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해발생현장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재해원인조사를 통한 동종 재해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중대재해 : ① 사망자가 1인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③ 부상자

나 직업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제42조의2 신설)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많으므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됐다. 그 내용은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뢰성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뢰성평가 제도도입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 및 정밀성을 확보하여 작업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작업환경측정제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결과 유해물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설비의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

4.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제62조)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보조·지원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보조·지원을 받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내용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시설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산재예방활동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보조 및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설 지원금 사용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사업 : 클린(Clean)사업장 조성지원,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재정지원, 산재예방시설 용자,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대행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지원 

〈 작업환경측정 시스템 〉

